

힘내라! 대한민국!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수신 국방부장관

(경유) 육군본부 고등검찰부 (형사기록담당)

제목 제주4·3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협조 요청

-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제주4·3사건에 관련된 재판의 위법성과 제주4·3특별법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 4·3을 진압하고 사법처리한 국군의 적법행위가 근거없이 매도당함으로써 대한민국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여 4·3 당시 재판기록 자료와 의견 등을 헌법재판소와 형사사법 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고자 자료협조 요청서를 첨부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주4·3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협조 요청서 1부. 끝.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

기안자

대표 전민정

협조자

시행 4·3연대 - 8 (2022. 3. 3.) 접수

우 03149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 5길 42 종로빌딩 6층 /

전화 (02)737-0403 홈페이지 jeju43.kr 이메일 info@jeju43.kr / 공개

제주4·3사건은 남로당 공산주의자들의 폭동이고 반란이다!

제주4·3사건 관련 정보공개청구 자료협조 요청서

I. 정보공개 청구 배경 및 취지

제주4·3사건은 법적성격이 공산폭동·반란입니다. 4·3당시 반역행위에 가담한 2,530명은 국방경비법 위반과 형법의 내란죄 등으로 군사재판을 받고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재심재판에 의하여 군사재판을 시정하려면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판결이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기존의 군사재판은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제주4·3사건에 가담한 행위는 대한민국에 반역하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는 초중범죄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사형을 면치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건국 정부는 군사재판을 받은 자들에게 사형, 무기, 징역선고 등 행위정도에 따라 형벌을 개별화하고 전반적으로 관대한 처벌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은 고사하고 5·18유공자가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고 6·25당시 집단처형된 예비검속자들이 국가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1인당 8천만원씩 배상금을 받아내는¹⁾ 추세에 편승하여, 역대 가장 좌편향된 왜곡된 이념과 역사인식을 가진 문재인 정권에서 70여 년간 조용하던 무기징역수를 포함한 생존4·3수형인 18명과 행방 불명 수형인 등의 유족 335명이 국가를 상대로 재심을 청구하여 공소기각판결²⁾과 무죄판결³⁾을 받아냈습니다. 형사보상청구소송⁴⁾에서 전원이 형사보상금을 받아내고 국가배상청구소송⁵⁾까지 제기하여 제주지방법원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더 나아가 미군정기 군사재판에 위법성이 있다며 미국의 책임까지 제기하고 있어서 사태의 추이로 볼 때 장차 김정은과 북한군에게도 배상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지 불안합니다.

4·3재심재판에서 법원은 공권력에 의한 고문, 불법구속, 적법절차 미준수, 공소장 불특정, 재판기록 부존재 등을 인정하여 공소기각판결과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군사재판은 무효라고 하는 수형인들의 일방적인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판결을 하였던 것입니다. 법원이 사실상 국가폭력을 인정하는 매우 잘못된 판결을 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의 잘못된 판결의 결과로 정부는 4·3수형인들에게 국가예산으로 막대한 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광주고법 2012. 5. 2. 선고, 제주 2011나506
2) 제주지법 2019. 1. 17. 선고, 제주 2017재고합4
3) 제주지법 2021. 3. 16. 선고, 제주 2020재고합1
4) 제주지법 2019. 8. 21. 결정, 제주 2019코11
5) 제주지법 2021. 10. 7. 선고, 2019가합14598

공산폭동·반란에 가담하였던 자로서 교전중에 사살당한 자, 귀순자, 수형자 등은 공 권력에 의해 희생당한 억울한 양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북한군에 편입되었거나 북으로 넘어가 생존한 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국민 혈 세로 배보상을 한다는 것은 제2의 반역입니다. 그럼에도 국회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를 부정하였던 이러한 자들에게도 보상하는 위헌법률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꿈꾸었던 반역자들을 칭송하고 보상하라는 지시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와 검찰은 대한민국 정부를 적극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정권의 정치적 이해에 순응하여 국가 자해행위에 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법원은 헌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수형자들의 일방적인 입장을 수용해 법치를 파 괴하고 있습니다. 좌편향 카르텔은 희생자가 아닌 부역자까지도 희생자로 만들기 위해 서 역사를 왜곡하고 그 결과 대한민국 정체성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현 정권에 서 국가기관 상호간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고 국가가 총체적으로 좌편향 으로 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가속화 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이 역사 적 사실과 법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여 방어하지 못하는데 기인합니다. 지금이라도 대 한민국 정체성과 진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왜곡을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방부는 국군이 4·3공산폭동 진압시 양민을 불법구속하거나 학살한 사실이 없으며 반역자와 그 부역행위자들을 정당하게 처단한 정당행위를 하였을 뿐이라고 적극적으로 반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고한 양민에 대해서는 적법행위에 대한 보상 을 하는 것이지 국가폭력에 대한 배상을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일 부 과잉진압을 일반화하여 국군이 매도당해서는 안됩니다. 무엇보다 국방부장관이 제 주도민에 대하여 사죄하는 등의 수세적인 행위는 멈추고 국방부에서 관리하는 자료를 시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 공감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좌편향 카르텔의 주장에 오류가 있음을 밝히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 국방부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제주4·3사건재정립시민연대는 4·3역사왜곡시정을 위해 현재 검찰청⁶⁾, 제주지법⁷⁾, 헌법 재판소⁸⁾등에 고발 및 소송 등을 제기하여 다투고 있으며, 체제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국방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명예를 회복 하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수호하며 반역행위자들이 민주화 투사로 둔갑하는 불의를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 국군의 사명인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6) 2022재항고172

7) 문재인 대통령 4·3추념사 망언에 대한 4·3유족 손해배상청구외소에 본회 소속 회원이 원고로 참여하고 있음

8) 현재 2021헌마514

II. 4.3 군사재판에 있어서 구속과 재판은 적법하였습니다.

1. 군수형인 명부 존재

국가기록원에 4·3 공산폭동·반란에 가담한 죄로 군법회의의 재판을 받은 2,530명의 군수형인 명부⁹⁾가 존재합니다. 군수형인 명부상의 자들은 단기 4281(1948)년 12월부터 단기 4282(1949)년 7월경까지 제주도 내에 설치된 수용시설 등에 구금되었다가 육지에 있는 교도소로 이송되었고, 이들에 대한 수형인 명부에 구체적인 죄명 및 적용법조((구)형법 제77조 위반, (구)국방경비법 제32조, 제33조)까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2. 군(형)집행지휘서 존재

국가기록원에 군수형인명부에 기재된 수형인들의 군형집행지휘서가 발견되었습니다. 1954년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및 제8조에 따라 1954. 5. 30.이전 경까지 적용되었던 ‘구법’인 일본 형사소송법(소화23(1948)년 법률제131호) 제534부터 536조¹⁰⁾까지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집행은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재판을 행한 재판소의 검사의 지휘에 따르고 재판집행의 지휘는 서면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사안들에 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아 형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당시 검사는 (구)형사소송법 제535조부터 536조를 근거로 확정판결이 있는 후 군형집행지휘서를 발부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3. 군수형자의 교정시설 수용요건은 적법서류(구속영장, 판결문 등) 존재 추정

당시 교정시설 입소대상자들에게 적용되던 1948년 4·3 당시 교정시설 수용절차의 근거법인 (구)감옥법¹¹⁾ 제11조에서는, “신입자가 있는 때에는 영장 또는 판결서 및 집행지휘서 등 적법서류를 조사한 후 입감시켜야 한다”라고 수용요건을 명시하고 있었고, 위 (구)감옥법 제11조 규정은 해방 후 (구)행형법 제8조¹²⁾(현행 형의집행및수용자처우에

9) 1948년 12월 871명, 1949년 7월 1659명

10) 대정2(1912)년 5월 5일 법률 제75호 (구)형사소송법 제8편 재판의 집행

제534조 재판이 확정된 후 집행한다. 단, 특단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내용에 의한다.

제535조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행한 재판소의 검사의 지휘에 따른다. 단, 그 성질상 재판소 또는 재판장, 수명판사, 예심판사 또는 구(관할)재판소 판사가 행해야하는 것은 이러한 내용에 의한다. 상소의 재판 또는 상소의 취하에 따른 하급심 재판소의 재판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상소 재판소의 검사가 그 집행을 지휘한다. 단 소송 기록 하급심 재판소에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소의 검사를 지휘한다.

제536조 재판집행의 지휘는 서면으로써 행하되, 재판서 또는 재판을 기록한 조서의 등본 또는 사본을 첨부한다. 단, 형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를 제외하는 이외 재판서의 원본, 등본 내지 초본 또는 조서의 등본 내지 초본에 인인(확인)이 되어있는 대로 행한 것으로 한다.

11) 감옥법 1908년 3월 법률 제28호

12) 행형법 (약칭: 형집행법)[시행 1950. 3. 18.] [법률 제105호, 1950. 3. 2., 제정]

관한법률 제16조¹³⁾)로 개정되어 오면서도 이러한 원칙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춰보면, 1948년 4·3 당시에도 위 (구) 교정시설 신입자의 수용절차에서 적법서류 요건은 영장과 판결서가 발부되어 제시되었음을 추정하는 명백한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4. 현행법 구속은 영장제시 불요

4·3 당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행법으로 체포된 자들로서 사후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추정되므로 불법구속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구속영장 발부 없이 불법 체포·감금하였다고 인정하여 재심대상판결을 삼고있는 법원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5. 군법회의 담당자 증언

4·3 당시 고원중 육군본부 법무감실 기록심사과장(중령)은 절차대로 군사재판이 있었고 재판기록도 모두 있었으나 6·25로 소실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법원의 재판은 위법하고 4·3수형인 등에 대한 잘못된 배보상을 취소하는 증거가 됩니다.

6. 4·3수형인의 때늦은 주장이 군법회의가 적법했음을 반증

누구에 의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고문을 당했는지 특정된 바가 없고, 사망, 후유장애는 그 당시 문제삼았어야 하며 이제와서 주장함은 신빙성이 없습니다.

7. 군법회의 명령서¹⁴⁾ 존재

수형인명부에 별첨된 군법회의 관련 명령서상 공판장소, 범죄사실, 항변, 판정 등의 자세한 내용은 판결문이 없었다면 도출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명령서는 재판이 있었고 판결문이 있었다는 간접 증거가 됩니다.

Ⅲ. 정보공개 청구 내용

4·3수형인에 대하여 영장이 발부되었고 재판도 확실히 있었으나 재판기록물이 검찰청에서 보존기간 경과로 폐기되었는지, 6·25때 소실되었는지, 교정시설에는 관련 서류

제8조 신입자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와 재판서 기타 적법의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약칭: 형집행법)[시행 2020. 8. 5.] [법률 제16925호, 2020. 2. 4., 일부 개정]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소장은 법원·검찰청·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처음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는 사람(이하 "신입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집행지휘서, 재판서, 그 밖에 수용에 필요한 서류를 조사한 후 수용한다. <개정 2017. 12. 19.>

14) 제주4·3사건추가진상조사보고서 I, 316면

를 제시만 하였는지 아니면 첨부하여 제출하였는지, 판결문 등 소송서류 보존 근거규범은 무엇이었는지, 당시 어떠한 기록물을 어디에서 어떻게(통합, 분산보관, 이관 등) 보관하다 어떤 사유로 폐기, 소실되었는지, 현행 군검찰사건보존규칙과 관련하여 실무상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들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1. 4·3수형인이 고문과 불법구속을 당했다는 주장과 관련

- ① 현행범 체포 후 사후구속영장을 발부하였는지
- ② 발부한 구속영장은 존재하는지
- ③ 존재한다면 어디서 몇 년간 보존하다 폐기, 이관 아니면 소실되었는지
- ④ 군검찰보존사무규칙 제7조3항과 동규칙 제21조 별표1과 관련하여 4·3수형인 재판서(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 등)는 영구보존으로 해석되면서 동시에 판결문 이외의 재판서는 영구보존 대상이 아닌 형의시효까지만 보존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에 대한 해석과 현행 실무상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 ⑤ 고문과 불법구속을 주장하는 자가 형사상 공소시효와 민사상 소멸시효 완성 이전에 재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는지
- ⑥ 시효와 관계없이 재심재판 제기전까지 법적으로 문제제기를 한 사실이 있었는지

2. 재판에서 예심조사¹⁵⁾, 공소장 피고인에 송달¹⁶⁾이 없었다는 주장과 관련

- ① 명백하고 단순한 현행범 사건들이라 예심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예심조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러한 방식이 적법절차를 위반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 ② 공소장은 피고인 대신 변호인에게 송달하게 된 이유가 폭동의 우려 등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에서인지

3. 예심조사서,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이 작성되지 않았다는 주장과 관련

수형인명부와 형집행지휘서의 존재는 적법한 사법절차를 거쳐 형집행하였다는 증거입니다. 4·3관련 일반 형사사건 판결문은 일반 검찰청 보존문서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당시 군법회의 사형수 중에 고등군법회의 설치장관의 확인 과정이나 재심의 과정에서 감형된 자가 96명이나 있었다¹⁷⁾는 것은 재판서류가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당시 감옥

15) 국방경비법 제65조

16) 국방경비법 제66조

17)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2003, 459면

법과 형사소송법 규정을 종합하면 판결문은 작성되었다고 추정됩니다. 그러나 군법회의는 일반 사법시스템과 다른 구조를 갖고 있어서 군법회의가 소송서류를 군검찰부에 송부하여 보존하였는지, 군검찰부는 교정시설에 군형집행지휘서를 인계하면서 판결문 등은 제시만 하였는지, 군검찰부는 서울에 있는 육군본부에 위치하여 6·25때 급히 후퇴하는 관계로 보존 중인 재판서를 소실하였는지 등 확인이 필요합니다.

- ① 판결문은 작성하여 어디에서 보존하였는지
- ② 국방부에 군법회의 재판과 관련한 공판조서나 판결문 기타 소송기록이 존재하는지, 아니면 존재하였다는 기록이 있는지 여부
- ③ 형무소에 수형자를 인계할 때 판결문은 제시만 하고 제출은 하지 않았는지
- ④ 육군본부 보통군법회의에 잔형 집행에 대한 이의신청사건에서 “천재사변 등에 의하여 재판서의 원본이 멸실하여 그 등본 또는 초본을 재판의 집행지휘서에 첨부함이 불가능할 경우” 라고 언급(1963년 8월 20일)되어 있는데 이는 4·3당시 판결문이 있었다는 증거로, 1963년 8월 20일 보통군법회의 재판서 사본 1부와 사건번호를 구할 수 있는지
- ⑤ 일반형사재판 판결문은 존재하는데, 군사재판 판결문은 없는 이유가 무엇인지
- ⑥ 국가기록원에 군사재판 판결문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는데 확인한 바가 있는지
- ⑦ 공소장, 공판조서가 재판서이긴 하나 영구보존 대상인 재판서에 해당하는지, 영구보존 대상 재판서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몇 년간 보존하다 폐기하였는지 아니면 이관하였는지
- ⑧ 예심조사서는 재판서에 해당하는지, 재판서가 아니라면 보존기관이 어디이고 보존기간이 몇 년에 해당하는지
- ⑨ 현행 공소장, 공판조서, 판결문은 영구보존 대상인지, 영구보존 대상이라면 군검찰부에서 보존하는지 아니면 국가기록원에 이관하는지

4. 군법회의가 언론보도되지 않았고, 군경조차도 ‘군법회의 재판’이 있었는지 모른다는 주장과 관련

- ① 군사재판은 보안상 이유로 보도 통제된 적이 있는지
- ② 고원중 전 법무부 장관은 군사재판이 있었고 판결문도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군사재판 판결문은 국방부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교도소에 송부하지 않았는지, 판결문이 6·25때 소실되었는지

5. 형무소에 가서야 형량 통보가 있었다고 생존수형인, 군인, 경찰 등의 주장과 관련

- ① 보안상 형무소 수감이후 죄명과 형량을 고지하였다는 견해가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있는지

6. 일반재판과 군사재판은 별개의 시스템으로 작동하는 것과 관련

민간인 범법자를 교정시설로 호송할 때는 수사기관에서 영장사본과 수용지휘서를 함께 보내고 형확정되면 검찰이 형집행지휘서와 판결문 사본을 교정시설로 보내주는데,

4.3 당시 군수형자를 교정시설로 호송하였을 때는

- ① 군당국이 균형집행지휘서와 영장, 판결문 등 사본 일체를 보냈는지
- ② 균형집행지휘서 만을 보내고 영장, 판결문 등은 국방부에서 보관하였는지
- ③ 균형집행지휘서 만을 보내고 영장, 판결문 등은 확인만 시키고 회수하였는지 등 여부

기타 학술연구 및 소송에 도움이 될 4.3관련 자료와 소실된 기록물 현황 등이 있으면 대한민국 정체성 회복을 위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